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44

발의연월일: 2024. 11. 5.

발 의 자: 엄태영·조지연·박덕흠

권성동 • 유상범 • 고동진

서천호 • 이달희 • 조경태

김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한 규정은 있지만, 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.

그런데 감전사고로 인하여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, 사망을 피하더라도 화상이나 절단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누전 및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가 등이 침수위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지하층 설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 임(안 제49조제5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방수를"을 "방수 등을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것 제53조제1항 중 "국토교통부령으로"를 "침수 시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침수 시 감전사고 예방에 관한 적용례) 제49조제5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(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·결정·인가·협의·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	제49조(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
도제한 등) ① ~ ④ (생 략)	도제한 등) ① ~ ④ (현행과
	같음)
⑤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	⑤
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	
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	
가・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	
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	
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	
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	
및 <u>방수를</u> 위하여 다음 각 호	<u>방수 등을</u>
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
	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 것
제53조(지하층) 건축물에 설치하	제53조(지하층)
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	
<u>국토교통부령으로</u> 정하는 기준	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
에 맞게 하여야 한다.	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등 국토
	<u>교통부렁으로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